

## 홍은2-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145(2005.05.19.)호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07-77(2007.07.26.)호, 제2009-42(2009.05.15.)호, 제2010-39(2010.05.13.)호, 제2011-31(2011.05.09.)호, 제2012-42(2012.05.14.)호, 제2013-49(2013.05.15.)호, 제2014-46(2014.04.17.)호 및 제2015-55호(2015.04.30.)호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정비계획 변경 고시된 홍은2-2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제1항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변경(사업기간 연장) 고시합니다.

2016. 05. .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### 1. 정비구역

사 업 명	위 치	면적(m <sup>2</sup> )	비고
홍은2-2 주거환경개선사업	서대문구 홍은동 8-235번지 일대	27,612	

### 2. 사업시행기간

사 업 명	사 업 시 행 기 간		비고
	변 경 전	변 경 후	
홍은2-2 주거환경개선사업	2005.05.19.~ 2016.05.18	2005.05.19.~ 2017.05.18	

### 3. 사업시행자 : 서대문구청장

### 4. 주거환경개선계획의 변경수립 내용

- 도로, 공원, 공공공지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기간 1년 연장
- 토지이용계획, 공공시설정비계획, 건축물개량계획, 도시계획사항 : 변경 없음

### 5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